
2025년 인천 서구 적극행정 실행계획(안)

2025. 6.



인천광역시 서구
[정책기획과]

목 차

| | |
|--|-----------|
| I. 적극행정 추진현황 | 3 |
| 1. 추진배경 | 3 |
| 2. 2024년 주요 추진성과 | 3 |
| 3. 반성 및 평가 | 13 |
| II. '25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 | 14 |
| 1. '25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 | 14 |
| 2. '25년 적극행정 추진 방향 | 14 |
| III. 지방자치단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| 16 |
| 1. 적극행정 세부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 | 16 |
| 2.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| 27 |
| IV.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| 32 |
| 1.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| 32 |
| 2.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| 34 |
| V.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·지원 확대 | 37 |
| 1. 사전컨설팅 활성화 | 37 |
| 2.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| 38 |
| 3. 소송 등 지원 | 39 |
| 4. 적극행정 법제지원 | 40 |
| VI.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| 41 |
| 1. 소극행정 자체점검 및 엄정조치 | 41 |
| 2.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 | 43 |
| VII. 적극행정 참여·소통 강화 | 43 |
| 1. 소속직원의 인식·행태 개선 교육 실시 | 43 |
| 2.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·확산 | 44 |
| 3. 적극행정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참여·소통 강화 | 45 |
| VIII. 향후 계획 | 47 |

I

적극행정 추진현황

1

추진배경

□ 적극행정 문화 정착 필요

-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각종 정책(적극행정 면책 등)을 추진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이나 운영과정에서 소극적 행정 여전
- 업무 관행 고수, 칸막이식 행정 처리, 소극 행정 등 공직사회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시급
- 공무원이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, 본인의 자율과 책임하에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 형성 및 새로운 방안 도입 필요

□ 추진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(적극행정의 장려)
-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(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)
-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(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)
- 행정안전부 「2025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」

2

2024년 주요 추진성과

□ 2024년 적극행정 주요 추진성과

-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(2024. 6.)
- 적극행정위원회 운영(4회 개최)

○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및 추진

①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제공(쌀) 지원 사업

▶ (주요내용)

- 사업대상: 관내 어린이집 약 403개소 (24. 12월말 기준)
- 지원내용: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급 (현원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*)
 - * 10인 이하 : 10kg / 40인 이하 : 20kg / 40인 초과 : 30kg
- 소요예산: 398,796천원

▶ (추진현황)

- 23. 12. :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(쌀) 제공 지원계획 수립
- 24. 1. :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(쌀) 제공 업체 선정 및 계약
- 24. 1. ~ 12. : 어린이집(약 403개소) 친환경 급식(쌀) 지급(매월)
- 언론사 보도(3개 신문사) 및 「Green 서구」 소식지 홍보
- 친환경 급식의 날 「초록남남데이」 지정 및 운영
 - * 매주 월요일 친환경 급식을 먹는 날로 지정하여,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친환경 식단을 제공하도록 어린이집에 권고

| 구 | 업체 | 구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자 선정 및 물품(쌀) 계약 | 어린이집에 매월 쌀 직배송 및 대금 청구 | 대금 지급 및 분기별 만족도 조사 (모니터링) |

▶ (추진성과)

- 2023년 친환경 급식(쌀)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(만족 91%)
- 2024년 친환경 급식(쌀) 제공 만족도 조사 실시(만족 93%)로 전년대비 향상
- 2024년 친환경 급식(쌀) 제공 지원율 약 96% 달성(지속 확대)

▶ (기대효과)

-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고품질의 급식재료를 제공하여 친환경 급식문화 조성 및 급식 품질 개선에 기여
- 관내 어린이집의 친환경 급·간식 재료 구매 확대

②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

▶ (주요내용)

- 이용대상 :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또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
- 지원내용 : 구인·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,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 및 동행 면접 지원
- 운영장소 : 서구청 제2청사 2층(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)

▶ (추진현황)

- '21. 3. ~ 5. :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 및 직업상담사 채용

- '21. 6. ~ 9. : 관내 기업 구인등록 협조 요청 및 홍보
- '21. 7. :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업무 개시
- '21. 7. ~ 8. :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홍보
 - 언론사 기획보도(12개 신문사) 및 지역방송 보도(sk브로드밴드)
 - 홈페이지 홍보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카드뉴스 홍보
 - 안내 전단지 2,000부 배부 및 배너 제작 설치
- '21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(만족 응답률 93%)
- '22. 6. ~ 12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6회)
- '22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(만족 응답률 100%)
- '23. 3. ~ 12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6회)
- '23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(만족 응답률 95%)
- '24. 3. ~ 12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6회)
- '24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(만족 응답률 98%)

▶ (추진성과)

-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실적

(2021. 7~2024. 12월 말 기준)

| 구분 | 운영 실적(합계) | 상담건수 | | | 구인·구직 등록 건수 | | | 알선현황 | | | |
|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소계 | 전화 상담 | 방문 상담 | 소계 | 구인 건수 | 구직 건수 | 소계 | 알선 건수 | 알선 취업 건수 | 본인 취업 건수 |
| 2021 | 3,065 | 2,145 | 1,970 | 175 | 122 | 2 | 120 | 798 | 676 | 36 | 86 |
| 2022 | 4,852 | 3,485 | 3,213 | 272 | 229 | 6 | 223 | 1,138 | 982 | 80 | 76 |
| 2023 | 4,653 | 3,232 | 2,851 | 381 | 279 | 15 | 264 | 1,142 | 979 | 97 | 66 |
| 2024 | 4,999 | 3,196 | 2,806 | 390 | 325 | 24 | 301 | 1,218 | 1,055 | 100 | 63 |

-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매년 6회)
- '21. 12 ~ 매년 말: 취업 만족도 조사 실시(4년 평균 만족 응답률 약 97%)

▶ (기대효과)

-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
-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

③ AI-IoT 기반 맞춤형봄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집중 운영

▶ (주요내용)

- 노인복지기관 맞춤형봄서비스 대상자와 연계하여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
- 이용대상: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
- 지원내용: 6개월간 주기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
 - 건강측정 디바이스 및 앱 연동하여 신체활동 실천, 혈당, 혈압 측정 등 미션 부여
 - 권역별 멘토-멘티 프로그램 '건강리더' 운영
 - 맞춤형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(내몸앳 건강 한스푼) 운영

▶ (추진현황)

- '22. 8. ~ 10. :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신청 및 선정, (1차년도) 국·시·비 예산 확보
- '22. 11. : AI-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운영
- '22. 12. :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
- '23. 1. :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(MOU) 체결
- '24. 1. : (2차년도) AI-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
- '24. 4. : 노인복지기관 4개소 어르신 대상 건강관리사업 관련 간담회 실시
- '24. 4. ~ 9. : 맞춤형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(내몸앓자 건강 한스푼!) 운영

▶ (추진성과)

- 건강행태 90.9% 개선, 만족도 98% 도출
- 허약 점수 개선(전반 1.7→1.6, 사회 0.8→0.6, 인지 4.4→4.9), 및 개선율 87% 도출
-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우수사례 선정(한국사회보장정보원상 수상)
- 총 12회 / 202명 참여, 만족도 98% (내몸앓자 건강 한스푼! 프로그램)

▶ (기대효과)

-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도모
- 노인복지기관 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노년세대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

④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및 배전선로 지중화 조성사업

▶ (주요내용)

- 사업위치: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618번지 일원(거북로)
- 사업기간: 2023. 6. ~ 2024. 4.
- 사업내용: 4m 보행로, 왕복2차선 곡선형도로, 고원식횡단보도, 고보조명, 가로등 설치, 상하차정차대 설치, 방범용·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, 거북로 일부구간 배전선로 지중화 등
- 사업예산: 총
 - 쇼핑특화거리 2,238,439천원(국 50%, 시 30%, 구 20%)
 - 지중화사업 2,114,214천원(시 24%, 구 28%, 한전 24%, 통신사 24%)

▶ (추진현황)

- '23. 6. : 거북로 일부구간 지중화 공사 착공
- '23. 8. : 쇼핑특화거리 조성공사 착공 (*제1,2차 공사기간 연장(총 75일))
- '24. 4. : 쇼핑특화거리 조성공사 완료
- '24. 5. : 거북로 지중화 공사 추진 중 (공정률: 70%)
- '24. 9. : 거북로 지중화 공사 통합통신사 통신케이블 절체 완료
- '24. 10. : 거북로 지중화 공사 추진 중(공정률: 80%)
- '24. 11. : 거북로 지중화 공사 부진공정에 대한 협의 진행

▶ (추진성과)

- '24. 4. : 쇼핑특화거리 조성공사 완료
- '25. 1. : 거북로 지중화 공사 한전 전신주 철거 완료

▶ (기대효과)

- 거북로 내 노점상을 판매시설로 입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및 시설개선
- 거북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으로 인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
- 역세권(석남역, 서부여성회관역)에 인접하여 이용객 유입 및 상권 활성화 기대
- 신거북시장 오구단길 브랜드와 어울리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지역상권이용자 및 주민들의 경관환경 개선

⑤ 청라IHP(북항경유) 통근버스 운영사업 추진

▶ (주요내용)

- 사업기간 : 2024. 7. ~ 2024. 12.
- 사업대상 : 청라IHP 및 북항공업지역 근로자
- 세부사업 내용

| 구분 | 내용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운행차량수 | 4대(45인승) | ※ 운행횟수, 배차시간 및 운행노선은 변경될 수 있음 |
| 1일 운행횟수 | 16회 (출근8회 / 퇴근8회) | |
| 운행구간 | 가정역 ⇄ 산업단지 | |
| 운행시간 | (출근) 07:15~08:30 / (퇴근) 17:15~19:00 | |
| 예상 이용자수 | 80,640명(40명×16회×126일) | |
| 예산현황 | 198,636천원 | |
| 운영방식 | 서구청 직영 | |

▶ (추진현황)

- '24. 1.: 이해관계인(법인·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) 협의
- '24. 2.: 청라IHP 통근버스 운영사업 추진계획 수립
- '24. 4.: 인천시 통근버스 운행허용 산업단지 고시
- '24. 5.: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결과통보(감사실)
- '24. 5.: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(북항공업지역을 포함한 청라IHP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가능 여부) 심의요청 및 원안 가결
- '24. 6.: 서구 산업단지·공업지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
- '24. 7.~8.: 청라IHP(북항경유) 무료통근버스 시범운행을 통한 노선 및 운행시간 등 수요조사 의견 검토·반영
- '24. 9.: 청라IHP(북항경유) 통근버스 정식 개통

▶ (추진성과)

- 월별 총 이용자 수 지속적 증가

- 7월(3,841명) → 8월(5,455명) → 9월(6,077명) → 10월(7,021명)
- 일자리 직접창출: 4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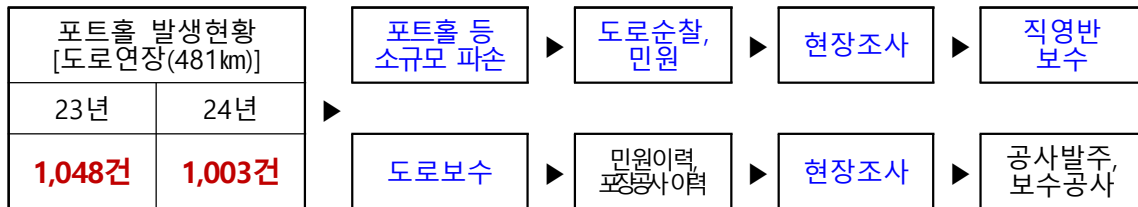
▶ (기대효과)

- 대중교통 연계 부족에 따른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고용확대 기여
- 출퇴근 무료 통근버스 운행으로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낙후된 중소기업 이미지 제고 등 이직률 억제 효과로 고용안정 기여
-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였으나 무료 통근버스 도입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유입이 증가하고 지역 경제력 증대에 기여

⑥ 시 기반 포트홀 정보관리 시스템 도입

▶ (주요내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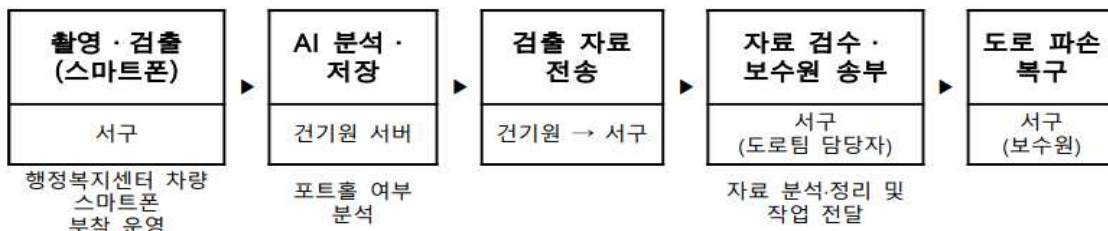
- 우리 구 포트홀 발생 및 조치 현황



- 현재 도로 순찰 및 민원에 의한 인지로 피해 발생 후 조치가 주를 이룸
- 매년 포트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, 이는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선제적 조치를 통한 예방 필요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(KICT)에서 개발한 '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' 시범 도입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로파손 대응 체계 구축

▶ (추진현황)

- 기존 포트홀 사후처리 방식을 벗어나 사전 탐지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



- 2024. 3. 18.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문 시스템 개발 내용 시찰
- 2024. 8. 9.: 경기도 시스템 활용 현황(내용) 시찰
- 2025. 3. 10.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 사용 관련 실무 협의
- 2025. 3.~4.: 국토교통부·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협약(MOU) 관련 협의

▶ (추진성과)

- 2025. 6.~8.: 우기철 시스템 시범운영 예정
- 2026. 이후: PMS(도로포장관리시스템) 구축 및 정식 운영 검토 예정

▶ (기대효과)

- 자동화된 도로 상태 점검을 통한 파손 발생지점 기록 및 신속 대응
- 도로 파손 육안 탐지 한계 극복
- 도로 점검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간 절감
- 시스템 도입 시,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유지 관리

○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: 총 12명 (상반기 5명, 하반기 7명)
-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 - * 실적가산점, 성과상여금 등급 부여, 특별휴가 2일 등

○ 적극행정 우수사례

| 소 속 | 성 명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총무과 (前 자원순환과) | 이효진 | 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'스마트 순환자원 시스템' 구축 기여 | 2024. 상반기 우수사례 |
| 세무1과 | 최광일 | 지방세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발송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및 예산 절감 | |
| 보건소 | 신순화 | 일상 속으로 스며드는 건강바람! | |
| 안전총괄과 | 이정욱 |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신속한 재난 상황 파악 | |
| 검단출장소 | 김택영 | 신도시 인구유입에 따른 안전하고 투명한 식품 및 공중위생 구축 | |
| 산림정원과 | 이연경 | 버려지는 임목폐기물 재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| 2024. 하반기 우수사례 |
| 주차관리과 | 이정균 |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견인 "인천 최초" 시행 | |
| | 임상순 | | |
| 정책기획과 | 김기태 | 검단신도시 불로동 암발파 문제에 적극 대응 | |
| 홍보정책과 | 손진주 | '서구 기록의 보물창고, 서구 아카이브 '서곶사진누리' 구축 | |

| | |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원과 | 조경아 | 지하철 유출 지하수 도담공원 생태연못 용수로 재활용하다 | |
| 안전총괄과 | 박광희 |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을 대응하다 | |

주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'스마트 순환자원 시스템' 구축 기여

▲ 추진내용 : 일상 속의 재활용 감축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「스마트 순환자원 회수 시스템」 구축

⇒ 주요성과 :

- 2022년 ~ 2024년도 스마트 순환자원 회수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
- 아동·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심 속 환경교육시설 조성
- 투명페트병 「AI 무인수거기」 최초 설치 및 확대(관내 총 27대)
- 자원순환가게 「서로e음 가게」 거점 확대(10개소)
- 아이스팩 순환보급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 추진

지방세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으로 체납징수율 제고 및 예산 절감

▲ 추진내용 : 체납안내문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을 통한 납세 편의 제공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, 예산 절감

⇒ 주요성과 :

-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한 개별사업자와 이용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
- 체납고지서 발송대상 정비 및 인천시 최초 시스템 도입
- 체납징수율 제고(우편발송대비 17%P 징수율 증가)
- 예산 절감(건당 송달비용 243원 절감, 56% 절감)

버려지는 임목폐기물 재활용으로 예산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

▲ 추진내용 : 가로수 관리(전지 작업 또는 고사목 제거) 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목재재활용 업체와 「임목폐기물 무상 처리 협약(MOU)」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 예산 절감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

⇒ 주요성과 :

- 임목폐기물 무상처리 협약(MOU) 체결
- 자원재활용을 통한 폐기물양 감소(연간 약 450톤의 임목폐기물로 목재펠릿 생산)
- 임목폐기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
(연간 폐기물 처리비용 약 5천만원 절감 효과)
-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(화석연료 사용 대체)
- 목재펠릿(우드칩) 생산을 통한 기업매출 상승,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

무료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강제견인 '인천 최초' 시행

▲ 추진내용 : 「주차장법」 개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처리를 위해 임시보관소 조성 등 신속한 추진으로 인천 최초 장기방치 차량 강제견인 실시하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주민 편의 증진

⇒ 주요성과 :

- 개정법 시행에 맞춰 사전 방치 차량 **임시보관소 조성**
(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하여 건축물식 주차장 조성대비 예산 절감)
- 개정된 **법령(강제견인 가능)** 안내 현수막 제작 및 설치를 통한 **홍보(100개소)**
- 공영주차장 모니터링 실시로 1개월 이상 불법 고정 주차 차량 적발 및 조치
(**63대 적발** 및 공문 발송, 개별연락을 통한 **54대 자진 정비**)
- 조례상 견인비용 초과하지 않도록 다수의 업체와 협의하여 업체 선정 및 이동명령 미이행 차량 '**인천시 최초**' 실제 강제견인 실시(**총 9대**)

지하철 유출 지하수 도담공원 생태연못 용수로 재활용하다

▲ 추진내용 : 주민간담회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검단신도시 내 지하철 공사로 발생 하는 유출 지하수를 공원 연못의 용수로 활용하여 수도자원 절약 및 도시 물순환 체계 기여

⇒ 주요성과 :

- 주민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협의 노력(공사 시행기관인 인천도시철도본부에 **건의사항 수용을 위한 지하수 관련 현장 조사 자료 확보 및 지속 협의**)
- 유출 지하수를 연못 용수로 재활용을 통한 수도자원 절약
(**연간 24,000천원 수도요금 절감 예상**)
- 조경용수(관수 등) 활용 및 공원 미관 향상
- 기후위기시대 동참 및 도시 물순환 체계 기여

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인한 미증유의 재난을 대응하다

▲ 추진내용 : 청라아파트 전기차 화재로 다수의 이재민 발생에 대해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관련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수립, 수습 활동 등 추진

⇒ 주요성과 :

- **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** 및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상황관리 및 전파
-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 (**총 28회 대책회의 실시**)
- 이재민을 위한 대피소 운영계획 수립 및 **11개소 대피소 운영**
- 주민 대피에 따른 **긴급구호 실시**(도시락 19,000여 개 지원, 물, 구호키트 등 지원)
-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
- 이재민 구호관련 **재난구호사업비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사용계획 수립**

□ **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제도 안내**

- (2024.04.09.) 2024년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 알림 및 팝업 게시

□ **소극행정 신고센터 상시 운영**

- 소극행정 처리결과

(작성기준일 : 2024. 1. 1. ~ 12. 31.)

| 소극행정 해당여부 및 유형 | | | | | 기관처리 건수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
| 해당 (소계) | 적당 편의 | 업무 해태 | 탁상 행정 | 기타 관중 심행정 | 합계 (A+B) | 처리중 | | | 처리완료 | | |
| | | | | | | 소계 (A) | 감사실 | 타부서 | 소계 (B) | 감사실 | 타부서 |
| 0 | 0 | 0 | 0 | 0 | 943 | 0 | 0 | 0 | 943 | 8 | 935 |

□ **사전컨설팅 감사 처리**

-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: 6건(2024년 회신기준)
 - 취약계층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른 사업정지 조정 가능여부
 - 산업집적법에 따른 공장승인 가능여부
 - LPG청소차량 처분(불용) 적격 여부
 - 사업장폐기물 선별공정을 위한 분리발주 가능 여부
 - 도로 포장공사 차선도색공사 분리 시공 가능 여부
 - 도담공원 내 검단2고등학교 부출입구 통학로 설치

□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저조

-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, 사전컨설팅, 면책 등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활용도가 저조함에 따라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

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이해도 증진

-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을 해소, 주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및 적극행정 과제 추진
- 적극행정 면책, 의견제시, 사전컨설팅 등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
- 적극행정 사이버교육, 인사혁신처 강사풀을 활용한 대면강의 실시로 직원들의 적극행정 이해도 제고

□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

- 행정안전부 및 우리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카드뉴스 제작·홍보
- 적극행정 온(ON), 자체 SNS(유튜브, 페이스북, 블로그 등), 서구청 홈페이지 등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재하여 대민홍보 강화

II

'25년 적극행정 추진전략 및 과제

1

'25년 적극행정 추진 여건

□ 적극행정 추진여건 분석(SWOT)

| 강점(Strength) | 약점(Weakness)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축적된 적극행정 추진 역량 | 경직된 공직 문화, 소극행태 |
| 기회(Opportunity) | 위협(Threat) |
|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방안, 보호제도 확대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 조성 | 급변하는 사회·경제적 환경변화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 |

2

'25년 적극행정 추진방향

목표

주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활성화

| 전략 | 전략별 핵심과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추진체계 확립으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○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○ 적극행정 법제 지원 ○ 적극행정 확산 교육 실시 |
|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○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|
|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으로 부담 경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○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○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○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|
| 소극행정 제제로 소극행태 개선 및 예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소극행정 엄정 조치 ○ 소극행정 예방 |
| 적극행정 주민 참여·소통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적극행정 국민신청제'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|

□ 적극행정 관계부서별 협조체계

| 소관부서 | 담당 업무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
| 정책기획과 (평가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- 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의결 지원 - 관계부서 협조체계 구축 -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직장교육과 사이버교육 강화 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계획 -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-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 운영 - 적극행정 법제 지원 -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| 적극행정 전담부서 |
| 예산법무과 (재정관리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공기업(서구시설관리공단) 적극행정 확산 | 적극행정 지원부서 |
| 감사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-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- 소극행정 혁파 | |
| 총무과 (인사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- 적극행정 교육훈련 지원 및 상시학습 이수 시간 부여 | |
| 전부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극행정 우수사례·우수시책 발굴 및 추진 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| |

- (전담부서) 정책기획과
- (적극행정 책임관) 정책기획과장

1

적극행정 세부과제 선정 등 추진계획

□ 추진배경

- 현장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, 지자체와 중앙부처, 민간, 부서 간 협업과제를 세부과제로 선정 및 실행계획에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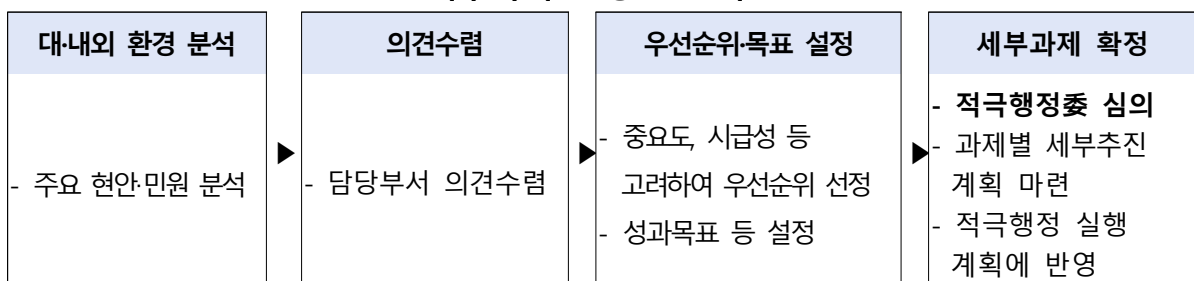
□ 선정기준

- 지자체 본연의 미션과 비전, 업무 특성과 조직문화, 주민·기업의 불편·애로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 등을 고려하여 세부과제로 선정
 - 기존 업무 추진성과가 미흡했거나 불명확한 규정으로 장기 미해결 과제
 -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
 - 혁신·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

□ 선정절차

-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적극행정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적극행정이 확산·정착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 수립·추진

< 세부과제 선정 프로세스 >



□ 추진방식

-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,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추진 지원

□ 세부과제

①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 (노인장애인과)

- (선정사유) 장애인일자리 전담 상담 창구 설치·운영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‘생산적 복지’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

○ (주요내용)

- 이용대상 :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또는 구인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
- 지원내용 : 구인·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연계, 찾아가는 취업 상담실 운영 및 동행면접 지원
- 운영장소 : 서구청 제2청사 2층(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)

○ (현재 추진현황)

- 21. 3. ~ 5. :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
- 21. 5. : 직업상담사 채용
- 21. 6. ~ 9. : 관내 기업 구인등록 협조 요청 및 홍보
- 21. 7. ~ 8. :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업무 개시 및 홍보
 - * 언론사 기획보도(12개 신문사) 및 지역방송 보도(sk브로드밴드)
 - * 홈페이지 홍보 및 지역화폐 커뮤니티 카드뉴스 홍보
 - * 안내 전단지 2,000부 배부 및 배너 제작 설치
- 21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
- 22. 6 ~ 12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6회)
- 22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
- 23. 3 ~ 12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6회)
- 23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
- 24. 3 ~ 12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6회)
- 24. 12. : 취업 만족도 조사
- 25. 3 ~ 4. :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(2회)

○ (기대효과)

- 공공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형 일자리 등 다양한 일자리 영역 확대 및 활성화
-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 활성화

○ (추진성과)

- 서로이음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실적

(21. 7 ~ 25. 3월 말 기준)

| 구분 | 운영실적 (합계) | 상담건수 | | | 구인·구직 등록 건수 | | | 알선현황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| 소계 | 전화 상담 | 방문 상담 | 소계 | 구인 건수 | 구직 건수 | 소계 | 알선 건수 | 알선 취업 건수 | 본인 취업 건수 |
| 전체 | 19,295 | 12,815 | 11,498 | 1,317 | 1,039 | 52 | 987 | 4,592 | 3,954 | 335 | 303 |
| 2021 | 3,065 | 2,145 | 1,970 | 175 | 122 | 2 | 120 | 798 | 676 | 36 | 86 |
| 2022 | 4,852 | 3,485 | 3,213 | 272 | 229 | 6 | 223 | 1,138 | 982 | 80 | 76 |
| 2023 | 4,653 | 3,232 | 2,851 | 381 | 279 | 15 | 264 | 1,142 | 979 | 97 | 66 |
| 2024 | 4,999 | 3,196 | 2,806 | 390 | 325 | 24 | 301 | 1,218 | 1,055 | 100 | 63 |
| 2025 | 1,197 | 757 | 658 | 99 | 84 | 5 | 79 | 296 | 262 | 22 | 12 |

- 찾아가는 장애인 취업상담실 19데이 운영

② **검단구 임시청사 건립사업** (분구추진과)

○ (선정사유)

- 검단구 신설에 따라 2026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나, 기존 청사 미확보로 임시청사 건립이 시급
-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규모의 공공청사 긴급 확보가 요구됨
-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방식 대신, 국내 최대 수준의 모듈러 공법을 도입하여 공기 단축 및 공간 효율 극대화
- 법령 및 행정절차 준수, 민·관 협업 등 고도의 조정이 필요한 복합사업

○ (주요내용)

- 위 치 : 검단신도시 도시지원 16부지(32,212㎡)
- 사업대상 : 본청 및 의회, 보건소 등 연면적 약 20,000㎡

- 소요예산 : 8,124백만원(임시청사 제작설치, 부대공사)
- 추진전략
 - 사전계획 고도화 : 기본구상, 지반조사 등 선행용역 병행 추진을 통해 착공 전 절차 간소화
 - 절차 신속화 : 관련 부서, 외부기관과의 협업 및 공정관리 회의 운영
 - 모듈러 공법 특화 설계 도입 : 모듈러의 한계에서도 최대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설계를 위한 노력
 - 예산절감 : 계약방식 및 과업부과, 토지의 무상사용, 조경 자재 등의 재활용 방안 검토 및 추진

○ (현재 추진현황)

- '24. 12. 16. : 검단구 임시청사 확보계획 수립
- '25. 1. 20. :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세부공정표 작성
- '25. 1. ~ : 도시지원 16부지 무상임차를 위한 LH 협의
- '25. 1. 1. ~ 3. 29. : 임시청사 건축 기본구상 용역 준공
- '25. 1. 24. ~ 4. 14. : 임시청사 부지 지반조사 준공
- '25. 2. 1. ~ 5. 15. : 모듈러 임차용역 발주 및 계약 진행
- '25. 5. 2. : 부대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

○ (기대효과)

- 2025년 12월 임시청사 준공 완료 및 2026년 초 개청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체제 개편 준비
- 모듈러 공법 활용으로 공사기간 약 30% 단축
- 예산 절감 효과
- 공공건축 선도모델 창출로 벤치마킹 대상 사업으로 부상

○ (추진성과)

- 전국 지자체 최초 수준의 대규모 모듈러 공법 기반 임시청사 건립 착수
- 내부 TF팀 구성 및 주간 단위 공정관리 체계 운영 중
- 선행 용역 병행 추진으로 준공 시점 3개월 이상 단축

- ③ **QR코드를 활용한 효율적인 지적재조사 사업 동의서 징구 (토지정보과)**
- (선정사유)
 - 관행대로 처리하던 업무에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동의서 징구 방법을 추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
 - (주요내용)
 -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중 지구 지정 단계에서 동의서 확보를 위하여 방문서면, 등기우편, 주민설명회, 팩스 등으로 처리하는 동의서 징구 단계의 업무를 QR코드 활용함으로써 동의서 징구 기간을 단축하고 등기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나타냄
 - * 지구지정동의서 징구 기간 단축: 평균 4일 단축
 - * 등기우편 비용 등의 예산 절감: 512천원 절감(기존 1,580천원)
 - (현재 추진현황)
 - 검암공촌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동의서 징구 후 QR 설문을 활용하여 전화 및 문자로 링크 전송 후 동의서 수집
 - * QR코드활용 동의서 제출 협조 공문 송부 시, 연락처 수집 동의 후 QR 링크 전송
 - (기대효과)
 - QR코드를 활용한 사업지구 지정동의서 징구의 만족도 증가
 - * 전체 응답인원 49명 중 12명이 만족도 100%로 응답
- ④ **AI기반 모바일 포트홀 자동탐지 시스템 시범 도입 추진 (도로과)**
- (선정사유)
 - AI기반 도로 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 가능
 - (주요내용)
 - 사업기간: 2025. 6. ~ 8.(우기철 시범 도입)
 - 사업대상: 포트홀 다수 발생 지역 3개동 관내 도로
 - 사업예산: 비예산[국토교통부·건설기술연구원 업무협약(MOU) 예정]

- 시스템 운영 체계



○ (추진현황)

- '24. 3.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문 시스템 개발 내용 시찰
- '24. 8.: 경기도 시스템 활용 내용 시찰
- '25. 3.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스템 사용 관련 방문 실무 협의

○ (기대효과)

- 자동화된 도로 상태 점검을 통한 파손 발생 지점 기록 및 신속 대응
- 도로 파손 육안 탐지 한계 극복
- 도로 점검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시간 절감
-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

○ (향후계획)

- '25. 5.: 국토교통부·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업무협약(MOU) 체결
- '25. 6. ~ 8.: 시스템 시범 운영
- '26. 이후: 도로포장관리시스템(PMS) 구축

⑤ **재개발·재건축사업 등 지원단 운영 (주택과)** 인천 최초

○ (선정사유)

- 성공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
- * 「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·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24.9.23.)

○ (주요내용)

- 지원대상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재개발·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 가입대상자

- 지원사항
 - 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분쟁·갈등 해소방안 강구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상담
 - 정비사업 상황에 대한 구민 대상의 맞춤형 상담
 - 정비사업 정체요인 분석,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상담
 - 정비사업 구역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방향 제안
 -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구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

- 소요예산

지원단 운영수당 : 56,000원 × 4시간 × 3인 × 4회 = 2,688,000원

○ (추진현황)

- 2025. 1.: 지원단 위원 선정 및 위촉(3인)
- 2025. 3.: 재개발·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(상담) 신청 안내문 발송(관내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)

○ (기대효과)

| 시행 전 | 시행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구민 이해도 부족 | ○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통해 구민 이해도 제고 |
| ○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간 분쟁·갈등 해결 미흡 | ○ 주민간 분쟁·갈등 해소를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 도모 |

○ (향후계획)

- 2025. 3.~: 재개발·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문(상담) 시행, 정비사업 관련 설명회·교육·행사 등을 통해 주민과 현장 소통(연중, 수시)

⑥ 행복마을 가꿈사업 총괄코디 중심 참여행정 고도화 (도시재생경관과)

○ (선정사유)

- 기존의 일방향 소통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, 총괄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상시소통체계 및 의견반영 구조를 구축하여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

○ (주요내용)

- 위 치: 연희동 735-2번지, 마전동 913-6번지 일원
- 규 모: 15,300㎡, 18,600㎡
- 사업기간: 2025년 ~ 2027년(3년간)
- 사 업 비: 각 33억(시비90%, 구비10%)
- 사업내용: 생활환경개선, 거점공간 조성, 주민역량강화 등

○ (현재 추진현황)

- 2025. 1.: 공모 사업계획서 제출
- 2025. 2.: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 및 총괄코디 선정
- 2025. 3.~: 사전회의 진행

○ (기대효과)

- 주민 의견의 실질 정책화 → 사업 만족도 제고, 갈등 예방, 설계 변경 감소 등 도시재생의 실행력 강화
- 행정 및 총괄코디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
- 사업 수행 중 갈등 최소화
- 거버넌스 기반 강화

○ (추진성과)

- 월례회의 및 소규모 주민회의 연간 20회 이상 운영
- 접수된 주민건의사항 중 소관부서 이송 후 피드백 완료율 90% 이상(2주 이내)

○ (향후계획)

- 2025. 5.~: 상시소통 및 사전준비 시작(1/3 주민동의, TF구성)
- 2025. 8.: 사업 진행상황 중간 공유회 개최
- 2025. 10.: 주민동의 완료
- 2025. 12.: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

⑦ **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신청방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** (교통정책과)

○ (선정사유)

- 다수의 신규 택배 화물 운송사업 민원에 대한 신속 정확한 민원 응대
 - * 인천시 화물자동차 수 40,950대, 서구 7,134대로 인천시 2위(2025.4월 기준)
- 민원인 입장에서 최소 2달간 구청을 포함한 4개의 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전국 최초로 타기관* 업무를 포함한 짧은 영상으로 제공
 - * 타기관 : 택배사, 한국통합물류협회, 용달화물협회

○ (주요내용)

- 배포 대상자 : 관내 택배용 화물자동차 현재 허가자 및 문의자
 - * 현재 허가자 수 : 3,024명, 신규허가 처리건수 : 353건 (2024.3~2025.2월 기준)
- 배포 방법 : 민원인의 안내 요청에 따라 문자로 영상 링크 발송
- 영상 설명

| | |
|--------|--|
| 영상 내용 | 서구청 교통정책과 외 차량민원과, 민원봉사과 업무 내용 및 각 부서 간 이동 경로 포함 |
| | 신규 허가 수리 업무 외 FAQ도 포함 |
| 영상 길이 | 8분 이내 (예상) |
| 업로드 위치 | 인천 서구청 서구홍보관 홈페이지 (예상) |

○ (현재 추진현황)

- '25. 4. 홍보영상 시나리오 작성
- '25. 5. 홍보영상 촬영 및 편집 (홍보정책과 미디어팀 협업)

○ (기대효과)

-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원 처리 과정의 불만을 저하

- 민원 처리 지연을 및 허가 취소율 저하로 업무 효율성 증가

○ (향후계획)

- 한국통합물류협회, 타 지자체, 택배 대리점에 홍보영상 공유

⑧ **치매파트너즈 적극 양성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(치매정신과)**

○ (선정사유)

-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치매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심적 부담 및 사회적 고립 초래
-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

○ (주요내용)

- 의 미
 - * 치매파트너: 치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동반자
 - * 치매파트너플러스: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
- 대 상 :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활동하고 싶은 지역주민 누구나
- 기 간 : 연중 상시
- 조 건

| 구분 | 치매파트너 | 치매파트너플러스 |
|----|-------------|---|
| 조건 |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| * 치매파트너 대상 한정 ①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이수 ② 치매관련 자원봉사활동 2시간 이상 |

- 활동 종류

| 구분 | 내용 |
|-------------|--|
| 카페 이용자 홍보활동 | 내소객 요구에 맞는 민원창구 안내, 사업 정보지 및 홍보물품 제공, 치매파트너 홍보 및 모집 |
| 조호물품 전달활동 |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(가저귀, 물티슈 등)을 자택에 전달 |
| 기억이음이 활동 | 치매 취약 경로당 방문을 통해 맞춤형 치매 예방 교구 비치, 어르신들의 자율적 인지활동 지원 및 모니터링 |
| 기억지킴이 활동 | 치매환자 가정방문을 통해 인지 교구를 활용한 인지 건강 및 일상 생활 수행능력 향상 훈련 제공 |

| | |
|------------|---|
| 프로그램 보조활동 | 센터 내 각종 프로그램 진행 시 출석 확인, 수업 준비물 정리 등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지원 |
| 인식개선캠페인 활동 | 피켓 및 판넬 등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,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, 치매파트너 홍보 및 모집 |
| 행사 보조 활동 | 인형탈 착용을 통한 홍보, 치매파트너홍보부스 운영보조, 질서 유지 등 |

○ (현재 추진현황)

- 2025. 1. : 치매파트너즈 사업 계획 수립
- 2025. 1. ~ 4. : 내소객·주민 대상 홍보 및 양성, 자원봉사활동 (내소객 홍보, 조호물품 전달, 행사 보조 등) 진행

○ (기대효과)

- 치매환자와 가족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치매파트너즈를 적극 양성하여 지역사회 내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치매 가족의 소외감 및 심적 부담 경감
- 다양한 사회주체가 동참하여 활동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를 위한 탄탄한 안전망 구축을 통한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

○ (추진성과)

(25. 4월말 기준)

- 치매파트너즈 양성 : 치매파트너 587명/치매파트너플러스 44명
- 자원봉사활동 진행 : 총 활동인원 218명/총 봉사시간 947시간

□ 기본방향

- 적극행정위원회는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‘주민참여형 적극행정’의 뒷받침 역할 강화
-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주민·기업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제시

□ 구성 및 운영

- (구 성) 위원장(부구청장) 포함 9명
 - (당 연 직) 4명 (부구청장, 기획재정국장, 행정문화국장, 감사실장)
 - (위 축 직) 5명
 - * 간 사 (적극행정 책임관) : 정책기획과장
- (운 영) 분기별 개최 원칙 *단,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
- (운영방식)
 -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최,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준수 *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9조
 -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
- (회의방식) 대면회의 원칙 (서면회의, 온라인 영상회의 가능)

□ 심의안건

< 주요 심의의결 사항 >

- 1)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2) 적극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주요 현안 문제 등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
- 3)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
- 4)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
- 5)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
- 6)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관한 사항
- 7) 적극행정 공무원(퇴직공무원을 포함)이 운영규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*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(*23. 추가)

*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33159호, 2022. 12. 27., 일부개정)

제17조(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(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<개정 2022. 12. 27.>
 - 1.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
 - 2.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·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(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)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
<개정 2022. 12. 27.>

○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

- (추진방향)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

- (추진개요)

- 운영기간 : 연중
- 신청대상 :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
- 운영 프로세스



1단계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중요 결정사항 심의요청

- 해당 부서에서 정책기획과로 공문 신청
- 단, 사전에 법률검토 후 신청 (심의안건 제출 시 검토내용 기재)
→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 방지

2·3단계 안건검토 및 사전심의

- 안건 제한 사유* 해당 여부 검토

< 안건 제한 사유 >

- ▶ 담당자와 대상 업무(사례)간 사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
- ▶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
- ▶ 관계 법령이 명확한 경우 등 신청자의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▶ 인가·허가 등의 거부처분
- ▶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·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▶ 이미 내려진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
- ▶ 감사·조사 또는 수사, 소송, 행정심판 등이 진행 중인 경우
- ▶ 부서 간 업무조정 또는 단속 강도의 조율 등 적극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
- ▶ 구청장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

- 필요시 심의 내용 사전검토 및 처리방향(안) 마련 → 부구청장 주재 간부회의

4단계 적극행정 업무의 처리방향 최종 제시

- 적극행정위원회 개최

- (처리기한) 안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

- *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청자와 협의 하에 기한 연장 가능

- (운영방법)

-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가능
-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활용
-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해관계자(주민 등) 의견 청취*

- * 회의 참석 발언 또는 서면 의견 제출

- (현안심의 강화)

- 주민안전, 장기 미해결과제,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항은 적극적 심의를 통해 적시 대응

- (의견제시 반영여부 회신)

-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위원회 의견의 반영 여부 등을 공문으로 제출

*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내용 또는 미반영한 경우 미반영 사유 등 기재

- (의견제시 효과)

- (징계 등 면제)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

*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6조

- (징계요구 등 면책)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

- (면책 건의)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 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

*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5조

* 면책대상 제외: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

□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

-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,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
-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
- 자체감사기구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간 신청 안전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

《 참고 :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비교 》

| 구 분 | 사전컨설팅 | | | 위원회에 의견제시 |
|-------|--|--|---|--|
| | 감사원 | 중앙부처 | 자체감사 | |
| 근 거 |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규정 §5 | 지자체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§5 | 공공감사법 시행령 §13의2 |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§12 |
| 주 체 | 사전컨설팅담당관 | 중앙행정기관장 | 자체감사기구의 장 | 적극행정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*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|
| 신청인 | 중앙행정기관장, 시도지사, 교육감 | 시·도지사 |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감사대상 기관의 장 | 공무원 |
| 대 상 |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|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| ①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, ②법령해석에 따른 민원업무, ③그 밖에 규제개선 업무 | 인·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|
| 제외 대상 | ①민원해소·책임회피 목적인 경우 ②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려는 경우 ④감사·수사·행정심판·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| 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②법령의 요건·절차가 명확한 경우 ③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④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| 일상감사 대상업무 ①주요정책 집행 ②계약업무 ③예산관리 업무 ④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| ※ 지자체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외대상 설정 가능 |
| 효 과 | 징계 요구 등 면책, 징계등 면제 | (좌동) | (좌동) | 자체감사 징계 요구 등 면책, 징계등 면제 |
| 비 고 | 중요사안은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에서 안건 심의 |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|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 상급 감사기구 또는 지원위로 의견제시 신청 가능 | 사전컨설팅 내용이 이해관계가 참여하거나,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기구 요청을 받아 의견제시 가능 |

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

□ 개 요

- (근거규정)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3조
- (선발대상) 2025년 적극행정 추진 우수공무원(우수사례)
- (선발시기) 상반기('25. 8월), 하반기('26. 2월)
- (선발규모) 반기별 6명 내외(연간 총 12명)

< 2025 적극행정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 목표 >

| 총 인원 | 상반기 | 하반기 |
|------|-----|-----|
| 12명 | 6명 | 6명 |

□ 심사기준 및 분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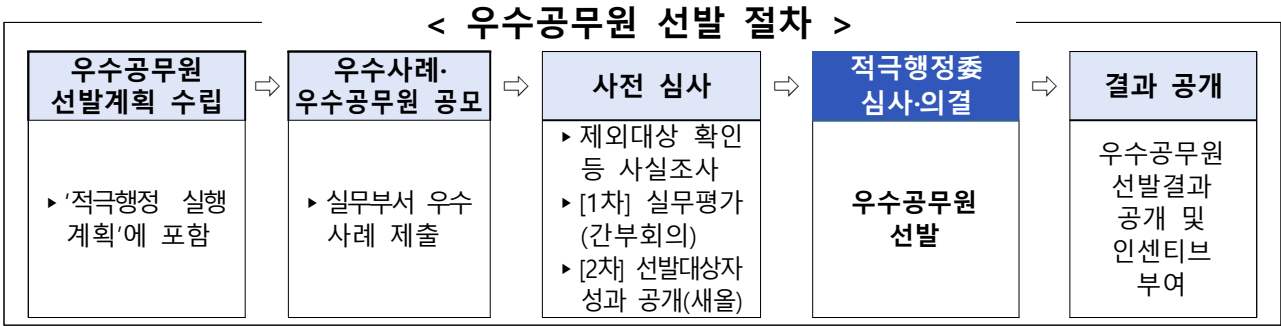
- (심사기준) ① 주민체감도(40%), ② 담당자의 적극성·창의성·전문성(30%), ③ 과제의 중요도·난이도(20%), ④ 확산가능성(10%)
- (분 야) 규제혁신, 민원·갈등해결, 공공서비스 질 향상, 새로운 정책 발굴·추진, 협업, 행정효율 향상 등

* 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우수하거나 친절·성실한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'적극행정 사례' 중심으로 선발

○ (제외대상)

- ▶ 기 수상사례 및 기존 유사사례의 일부 내용을 단순 수정·변경한 경우
※ 수상경력(연도, 시상부처, 훈격, 사례명, 시상대회 등)과 새로운 성과 명확하게 제시
- ▶ 기타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,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례
- ▶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자,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
※ 다만, 징계 등이 사면되었거나 주요비위(금품·행음수수, 공금횡령·유용, 음주운전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)가 아닌 징계나 불문(경고)처분이 말소된 경우 선발 가능
- ▶ 추천일 현재 1년 이내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자
- ▶ 기타 공·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▶ 2년 이내 같은 훈격(구청장) 포상 대상 제한

□ 선발절차



① 부서별 적극행정 우수사례(공무원) 제출

- 부서장이 공적 확인하여 각 실·국장, 보건소장이 추천

* 동 행정복지센터 ⇨ 행정문화국장 추천

② 사실조사를 통한 제외대상 조사

- 우수공무원 대상자에 대한 포상·징계여부 확인(감사실, 총무과)
- 선정대상자 및 우수사례 게시(새울 시스템) 및 이의신청 접수

③ 간부회의 사전 심사(필요 시)

- 부구청장 간부회의 시 접수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차 심사

④ 적극행정위원회 최종 심사 및 선발

- 심사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

* 우수사례가 없는 경우 또는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미선발, 소수점 둘째자리까지

□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

- (대 상) 우리 구 적극행정 우수사례(공무원) 선발 건 및 신규사례
- (선정기준) 창의성, 전문성, 주민체감도, 확산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출사례 선정
- (인센티브) 범정부 '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' 에서 선정된 사례의 공적자에게 포상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
*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와 연계 진행

2

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
□ 개 요

- (관련근거)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
- (기본원칙)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인센티브 1종 부여
 - * 개인 희망 반영
- (부여시기) 상반기('25. 9월), 하반기('26. 3월)
 - * 범정부 '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' 선정 공적자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계 진행
- (대 상) 상·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
- (규 모)

< 2025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목표 >

| 총 인센티브 | 파격적 인센티브 |
|--------|----------|
| 12명 | 6명(50%) |

□ 인사상 인센티브 유형

|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파격적 인센티브 | 특별승진 | 5급 이하 공무원을 1계급 승진 임용 |
| | 특별승급 | 호봉제 적용 공무원의 호봉을 1단계 승급 |
| | 성과급 최고등급 |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|
| | 근평가점 | 상·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 1.5점 범위 내 가산점 부여 |
| | 교육훈련 우선선발 | 국내·외 장·단기 교육훈련 대상자로 우선 선발 |
| 인사상 인센티브 | 근속승진기간 단축 |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|
| |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단축 | 대우공무원 선발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|
| | 포상휴가 부여 |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|
| | 희망부서 전보 | 필수보직기간 경과 전이라도 희망부서로 전보 |

□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기준

○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선정 *인센티브와 함께 기관장 표창 수여

| 구 분 | 인센티브 유형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|
| 최우수 (90점 이상) | 파격적 인센티브 | · 특별승급 (확대) ·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· 실적가산점 1.5점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 (장기 또는 국외) | 택1 |
| | 인사상 인센티브 | · 특별(포상)휴가 3일 · 희망부서로의 전보 | |
| 우 수 (80점 이상) | 파격적 인센티브 | ·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A등급 이상 · 실적가산점 1.0점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 (단기 또는 국내) | 택1 |
| | 인사상 인센티브 | · 특별(포상)휴가 2일 · 희망부서로의 전보 | |
| 장 려 (70점 이상) | 파격적 인센티브 | · 실적가산점 0.5점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 (단기 또는 국내) | 택1 |
| | 인사상 인센티브 | · 특별(포상)휴가 2일 · 희망부서로의 전보 | |

* 심사점수를 기반으로 개인 희망,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종 결정

* 교육훈련 우선선발의 경우, 우수공무원 선정 후 1년 이내에 사용(적용) 가능한 경우에 선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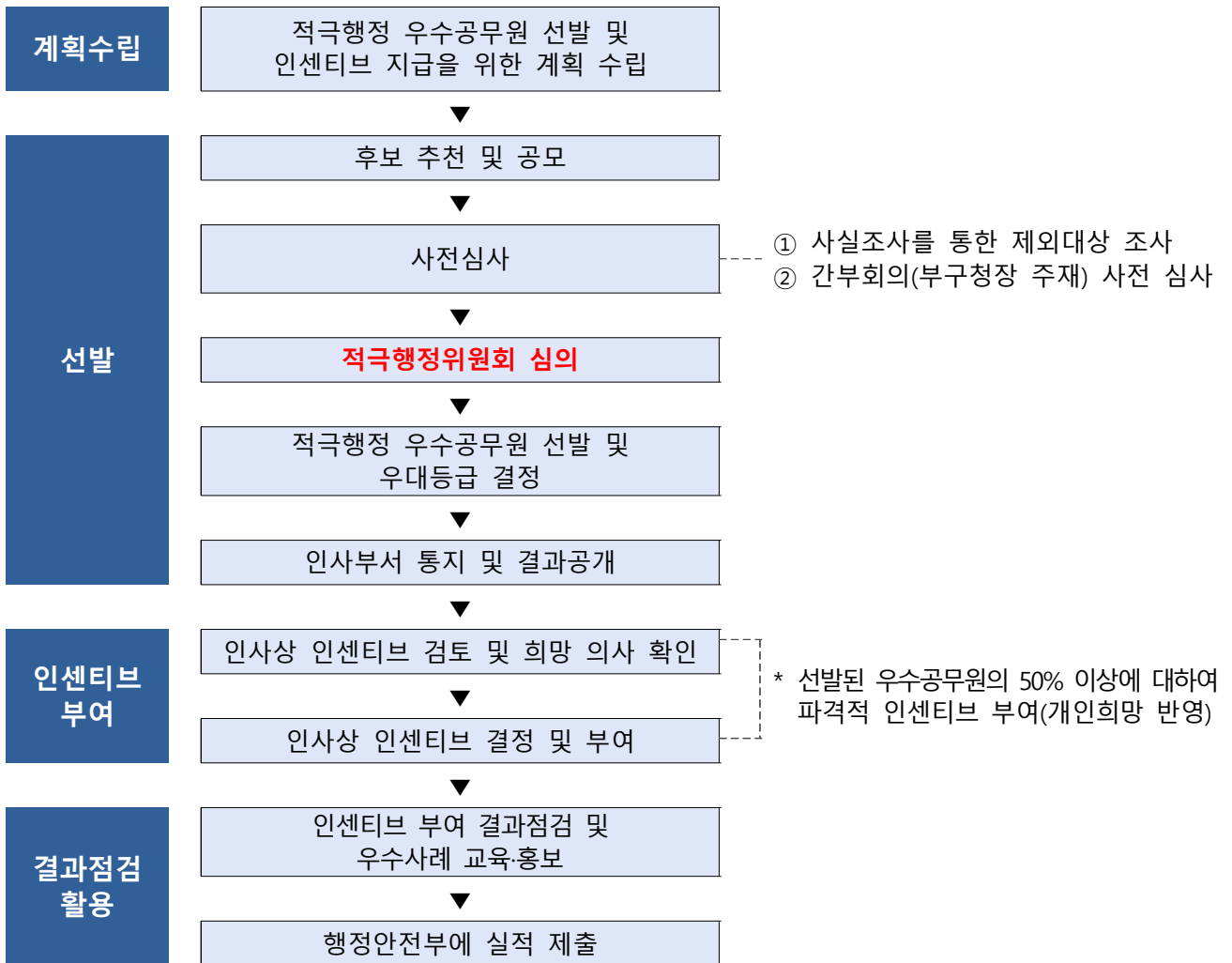
○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 *인센티브유형 확대 적용

| 인센티브 유형 | | 비고 |
|-------------|--|----|
| 파격적 인센티브 | · 특별승진 · 특별승급 ·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· 실적가산점 1.5점 · 교육훈련 우선 선발(장기) | 택1 |
| 인사상 인센티브 | · 근속승진기간 단축 ·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· 특별휴가 3일 | |

* 범정부 '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' 선정 공적자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연계 진행

*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공적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무원 최우수 등급과 동일하게 간주

□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절차



- (우수공무원 선발 / 정책기획과) 반기별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·우대등급 결정 결과 통보
- (인센티브 결정 / 정책기획과) 우대등급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인센티브 유형을 우수공무원에게 제시하고 인센티브 확정·통보
- (인센티브 부여 / 총무과) 인사일정에 맞춰 인센티브 유형별 부여시기 도래 시 즉시 부여하고, 결과를 전담부서에 통보
- (결과점검 / 정책기획과)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결과 확인·점검

□ 사전컨설팅감사 운영

- (관련규정)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
- (신청주체) 구청장(구 감사대상부서는 자체 감사부서를 거쳐 신청)
- (대상업무) 적극행정 지원 사무, 법령 등 해석사무
 - 인·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
 -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·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
 -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
 -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
- (신청절차)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
 -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전, 서구청 감사부서의 장의 검토 실시
- (처리절차)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
 - 인천광역시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,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
- (처리기간)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
- (효과)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「인천광역시 감사 규칙」에 따른 감사 면제
- (활성화 계획) 사전컨설팅감사 사례 적극 홍보

□ 면책심사 상담창구 운영: 감사기간 중

- (개 요)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운영으로 ‘감사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’ 조성
- (근 거)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
- (요 건)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익을 위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,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
- (면책제외대상)
 - 금품수수의 경우, 고의·중과실,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
 -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
 - 위법·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
- (반 영)
 - 감사보고서 작성 시 적극행정 면책사례 있는 경우 포함 작성

□ 징계 등 면제

-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
 - 감사원·정부(행안부)·시도 및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, 징계 면제
 - *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제외
 - ※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6조제2항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2조의2제3항
-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처리 시 징계면제
 - 공무원이 인가·허가·등록·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하고,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

- *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제외
- ※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제12조, 제16조제3항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제2조의2제4항

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지정·운영

- (적극행정 면책보호관) 정책기획과장
- (면책보호관 지원대상) 면책 건의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된 자
 - * 자체감사기구의 감사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
- (면책보호관 역할)
 - 적극행정위원회 심의·의결로 인정된 공무원의 면책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등 권리 보호

3

소송 등 지원

□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

- (근거)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,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(2023. 10. 23. 제정)
- 적극행정의 결과로 공무원(퇴직공무원 등 포함)이 징계소송 등 요구된 경우 지원
 -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, 징계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소명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지원
 -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·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
 - *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제4항
 - *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
- 직무 관련 사건으로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 등 법률적 지원
 -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 및 고발 등을 당해 기소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 등 지원

*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(적극행정지원 심의·의결)

- 공무원등이라 함은 **전출 및 퇴직 공무원, 청원경찰,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여, 현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**

*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(적용범위)

-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 **고소·고발 및 민·형사성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**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송대리인·변호인 선임비용 지원

| | |
|----------|--|
| 고소·고발 등 |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원 이하 의 범위 내 |
| 민사상 책임소송 | 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」(대법원 규칙)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|
| 징계 등의 요구 | 200만원 이하 의 범위 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(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) |

*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)

4 적극행정 법제지원

□ 적극행정 법령 유권해석 DB 지원

-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자료 조직 내 게시판 연계
 - 반복적인 유권해석 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태규제 사전 차단

□ 법제처 『자치법규 입법컨설팅』 제도 적극 지원

- 자치법규 사전심사 단계에서 법제처 입법컨설팅 활용을 통한 적극행정 법제 입안 지원
 - 연초 법제처 사전입법컨설팅 수요 신청 후 상시 지원 가능

□ 법제처 『자치법규 사전 의견제시』 제도 활용

- 자치법규 사전심사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으로 유권해석 필요시 지원 절차 활용 및 법령해석사례 공유
 -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각 기관의 법령해석사례 DB 홍보 및 활용

1 소극행정 자체 점검 및 업정 조치

□ 소극행정의 정의

-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

□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(예시)

| 구 분 | 정의 및 판단기준(예시) |
|-----------|--|
| 적당편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,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·지식·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· 규정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업무임에도, 민원인 등과 타협·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행태 |
| 업무태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합리적이거나 적법한 사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불이행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 · 민원신청·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·처리하지 않는 행태 ·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|
| 탁상행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, 기존의 불합리·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, 종전 지침을 따르거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· 보다 효율적·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행태 ·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|
| 기타 관중심 행정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국민 편익과 공무원 개인 또는 소속기관의 이익이 상충되는 상황에서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◇ 판단기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규정·예산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·활용함으로써 사적 이익 또는 소속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|

* '소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비위 판단기준'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와 관할 징계위원회가 소극행정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,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

□ 소극행정 자체 점검

-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소극행정 행태를 자체 점검
 - 민원사무 총괄하는 부서(민원봉사과)에서 민원처리 점검을 진행하며, 자체 기준에 따라 민원 지연 등 특이사항 발생 시 감사실 통보
 - 민원사무 등 특이사항 확인 시 민원처리 확인·점검 후 위법, 부당한 민원처리 사항(민원처리 지연 등)에 대하여 관련 기준에 의거 조치

〈조치기준 예시〉

| 위반내용 | 처분내용 | 비고 |
|--|------|---|
| - 지적사항 항목별 3회 이상 반복 지적시 - 민원사무 처리기간 3일 이상 지연시 | 주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1년간 점검결과를 기준으로 조치 ●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 경위, 업무 태도 등에 따라 처분 내용은 가감할 수 있음 |
| - 민원사무 처리상태 점검에 따른 '주의' 3회 이상 조치시 - 민원사무 처리기간 5일 이상 지연시 | 훈계 | |
| - 민원사무 처리상태 점검에 따른 '훈계' 3회 이상 조치시 | 경징계 | |

□ 소극행정에 따른 조치사항

-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
 - 비위의 정도 및 고의·과실여부를 고려하여 "징계" 또는 "주의·경고"
 - 악성, 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
 - *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 관련 감독자도 문책
 - *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
 - * 주의 또는 경고 조치 시 「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 인사상 불이익 부여

【징계양정기준(지방공무원 징계규칙)】

| 비위의 유형 |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|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/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| 비위의 정도가 경과실/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|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1. 성실 의무 위반 | | | | | |
| 마 | 부작위·직무태만(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) 또는 회계질서 문란 | 파면 | 해임 | 강등·정직 | 감봉·견책 |
| 바 | 소극행정 | 파면 | 파면·해임 | 강등·정직 | 감봉·견책 |

2

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 민원 처리

□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및 민원 처리 세부사항

-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
 - 「소극행정 신고센터」 운영: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
 - 감사부서에서 조사·처리하고, 결과통보
- 소극행정 민원 접수·처리 세부절차
 - 소극행정 민원신청(민원인) → 소극행정 접수(감사부서) → 소극행정 여부 판다(감사부서) → 소극행정 조사·처리(감사부서) → 사후관리
 - *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 처리부서 재지정
- ‘소극행정 신고센터’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, 소극행정 유형, 시정조치,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극행정위원회에 보고

VII

적극행정 참여·소통 강화

1

소속직원의 인식·행태 개선 교육 실시

□ 적극행정 확산 교육

- 적극행정 활성화 직장교육(집합교육)
 - (목적) 적극행정과 지원제도·사례에 대한 전과교육을 통해 공무원 인식 전환 및 공직사회 내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
 - (일정) 2025년 11월 *예정
 - (대상/시간) 전 직원 / 연 1회 *(부)단체장 직접 참여 / 서구시설관리공단 포함
 - (교육방법) 인사혁신처 강사풀을 활용한 대면 강의
 - (교육내용)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등
- 이러닝 교육
 - (일정) 2025년 2월~11월

- (대 상) 전 직원
- (교육방법)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내 강의수강
- (교육과정) * 7개 과정 중 1개 과정 이상 이수

| 학습 사이트 | 과정명 | 상시학습 인정시간 | 신청기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| e-다함께 적극행정 | 50분 | 2025. 2. 1. ~ 11. 25. |
| | e-행정의 진심, 적극행정 이해하기 | 1시간30분 | 2025. 2. 1. ~ 11. 25. |
| | e-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.0 (지방자치단체) | 2시간 | 2025. 2. 1. ~ 11. 25. |
|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| 다함께 적극행정 | 1시간 40분 | 2025. 2. 1. ~ 11. 25. |
| | 행정의 진심, 적극행정 이해하기 | 1시간30분 | 2025. 2. 1. ~ 11. 25. |
| |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.0 (지방자치단체) | 1시간 | 2025. 2. 1. ~ 11. 25. |
| |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되기 (관리자편 / 실무자편) | 각 1시간30분 | 2025. 2. 1. ~ 11. 25. |

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·확산

□ 적극행정 홍보 강화

○ 대민홍보

- (제 작)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흥미도와 전달력이 높은 홍보 콘텐츠 제작
 - * 상·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(공무원) 선발 사례 및 우수사례 발굴
- (확 산) 적극행정 온(ON), 자체 SNS(유튜브, 페이스북, 블로그 등), 구 홈페이지 등에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재, 적극 행정 보도자료 배포 등

○ 내부홍보

-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, 우수사례 등을 구성원에게 공유

□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

- (도입목적)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*를 활용하여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창구 마련

*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,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

❖(도입배경) 기존의 적극행정 지원제도는 공무원만을 신청 주체로 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에 한계, 국민도 적극행정 신청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및 정책 참여

❖(민원과의 차이)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공익적 문제에 대해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일반 민원과는 그 취지와 활용 가능한 수단에서 차이가 있음

- (운영근거)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8조의 2,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의 2, 「적극행정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
- (신청요건) 신청대상에 해당하면서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

| 신청 대상 | 제외 대상 |
|-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신청 대상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☑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☑ 타 민원·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☑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 처리 가능 ☒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 ☒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☒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☒ 판결·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☒ 사인간 권리관계,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☒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☒ 단순 질의, 진정, 불만 민원인 경우 ☒ 특정 개인·단체·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※ 「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 제14조제3항 참조 |

○ (운영절차)

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|
| ① 신청 및 접수 | 국 민 | 신청자격 | ❖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(개인, 법인, 단체) |
| | 국민신문고 (적극행정 신청창구) | 신청요건 | ❖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❖타 민원·제안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<u>반려된 사안</u> ❖ <u>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민원의 거부</u> 또는 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 |
| | | 신청방법 | ❖'국민신문고'의 '적극행정 신청창구'를 통해 신청 ❖신청 시 기존 거부 민원 또는 불채택 제안 첨부 |
| ② 처리 | 권익위 | 1차검토 기관배정 | ❖권익위에서 신청에 대한 사실관계 및 신청요건 등 검토 ❖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등에 대한 <u>의견제시</u> ❖ <u>소관기관에 배정</u> (다부처 지정, 소관기관 정정 배정 등) |
| | 적극행정 담당부서 | 종결여부 2차 판단 | ❖신청 내용, 요건 등 검토 후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<u>종결처리 가능</u> ❖소관이 아닌 경우 <u>소관변경 신청</u> (→권익위) ❖ <u>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신청 내용 전달</u> |
| | 처리부서 | 처리 사유의사항 | ❖기존에 해결을 신청했던 사안이므로, 명백한 사유*가 없는 한 <u>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문을 구해야 함</u> *△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(지침 제14조제2항) △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경우 (지침 제14조제3항) ❖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❖종결 처리하는 경우 사유 통지 |
| ③ 사후관리 | 적극행정 담당부서 | 관리사항 | ❖처리부서의 접수·처리현황 및 이행상황 관리 ❖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독려 ❖권익위에 <u>실적 제출</u> |
| | 권익위 | 사후관리 | ❖주기별 실적 취합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 관리 ❖운영상황을 <u>모니터링하여 지속적 제도 보완 및 운영개선 권고</u> |

□ 적극행정 추진일정

| 주요 내용 | 일정 | 비고 |
|--|--------|----|
| 1.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| | |
| ○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| ~6.30. | |
| ○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-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·의결 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- 적극행정 처리방향 의견제시 등 | 연중 | |
| ○ 적극행정 교육 -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(연 1회 이상) - 적극행정 이러닝 수강 독려 | 연중 | |
| ○ 적극행정 국민참여·소통 강화 -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작·전파, 홈페이지 및 '적극행정 온(ON)' 게재 -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운영 및 처리 | 연중 | |
| ○ 적극행정 종합평가 실적 제출 | 익년도 1월 | |
| 2.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| | |
| ○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| 상·하반기 | |
| ○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| 상·하반기 | |
| 3.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| | |
| ○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| 연중 | |
| ○ 「적극행정 면책보호관」 지정·운영 | 연중 | |
| ○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및 퇴직공무원까지 지원대상 확대 - 관련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 | 연중 | |
| 4. 소극행정 혁파 | | |
| ○ 소극행정 엄정조치 | 연중 | |
| ○ 소극행정 신고 및 재신고 처리·이행 상황 관리 | 연중 | |

□ 협조사항

- (전부서)
 - 적극행정 집합·이러닝 교육 이수
 - 적극행정을 통하여 성과창출이 기대되는 추진과제 발굴
 -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추진
- (감사실)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사전컨설팅 제도운영 등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철저
- (총무과) 인사일정에 맞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